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62
----------	-------

발의연월일 : 2018. 10. 4.

발의자 : 김삼화 · 권은희 · 최도자

이동섭 · 최경환<sup>평</sup> · 김종회

김수민 · 김중로 · 이찬열

김관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사업의 내용을 ‘난방’에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에너지복지 사업은 난방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폭염이 발생하는 혹서기에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에너지 관련 통계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토대가 우선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난방뿐 아니라 냉방 역시 에너지복지 사업의 중요한 부분임을 재확인하고, 에너지 관련 통계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의2, 제16조의2제1호의2 및 제19조제2항).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의2 중 “제시하여”를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16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고효율의 냉방·난방 장치 등의 보급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에 따른 통계를 작성·분석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냉방·난방 장치의 보급 현황 및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사용 등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에너지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u>제시하여</u>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7의2. ----- ----- ----- ----- <u>제시하여</u>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 ----- ----- ---.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 ----- ----- ----- ----- ----- ----- ----- -----.
1. (생 략) <u>&lt;신 설&gt;</u>	1. (현행과 같음) <u>1의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고효율의 냉방·난방 장</u>

<u>치 등의 보급</u>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 · 공표) ① (생 략)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 · 공표) ① (현행과 같음)
<u>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 계를 작성 · 분석하며, 그 결과 를 공표할 수 있다.</u>	<u>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에 따른 통계를 작 성 · 분석하며, 그 결과를 공표 할 수 있다.</u>
③ ~ ⑥ (생 략)	1.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 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냉방 · 난방 장치의 보급 현황 및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 사 용 등 ③ ~ ⑥ (현행과 같음)